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5-809호:

도시관리계획[내방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내방역 일대 지구
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재공람공고

〈이면없음〉

공 관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서 초 구

※ 이 구보는 서초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http://www.seochu.go.kr>-열린구청-행정정보-서초전자구보)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5-79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4월 10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1. 개정이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수수료)의 위임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수수료 감면 대상에 대한 정비 및 별표[수수료]를 현행화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임법령에 따른 목적 및 수수료 규정 정비(안 제1조, 제2조, 별표)

나. 수수료 감면대상 정비 및 규정 명확화(안 제3조)

다. [별표] 수수료 종목 현행화 및 근거명시(전부개정)

라. 상위법 및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정정 및 띄어쓰기 등 정비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4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다. 기재내용

-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라. 제출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장(건강정책과)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건강정책과(서초동, 서초구보건소)
- 팩 스 : 02-2155-8189
- 전자우편 : irene12295@seocho.go.kr

마. 문의 : 서울특별시 서초구보건소 건강정책과 건강기획팀(☎.02-2155-8001)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초구 홈페이지(<http://www.seocho.go.kr>) ‘입법예고’ 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25조”를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로, “및 진료비”를 “또는 진료비”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수수료”를 “수수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조례에”를 “조례에서”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2종수급권자에 대해서는”를 “2종수급권자는”로, “별표 제5·6호”를 “별표 중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 중 “그 유가족,”을 각각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가족”을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진료비를 면제받으려고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제10호까지에 따른 진료비 면제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자에 한정하며, 면제 대상자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 중 “그날”을 “당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제2조 관련)

종목	단위	금액	비고
1. 건강진단서 및 건강진단결과서, 각종 제증명			
가. 건강진단서	1통	3,000원	온라인 발급은 무료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를 포함한다
나. 건강진단결과서	1통	3,000원	건강진단결과서 또는 건강진단서와 결핵진단서를 동시 발급할 경우, 각 증명서 수수료에 라 '항을' 더한 수수료액으로 한다. 온라인 발급은 무료
다. 결핵진단서 및 확인서	1통	1,500원	온라인 발급은 무료
라. 기 발급증명서 추가 발급	1통	300원	*'가~다'항에 한함
마. 방사선필름 사본 및 영상 사본 교부	1매	3,000원	
바. 의료기관 및 약국(휴, 폐업) 사실 증명	1통	1,000원	
2. 인·허가 및 신고 신청에 관한 사항			
가. 종합병원 ·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 개설 허가 신청	1건	100,000원	

나. 종합병원 · 병원 · 치과병원 · 한방 병원 또는 요양병원 개설 허가사항 변경신청(개설장소 이전 허가의 경우에 한함) 다.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 부속 의료기관 또는 조산원 개설신고 라.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 부속 의료기관 또는 조산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 신고의 경우에 한함) 마. 안경업소 개설 등록 신청 바.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사. 치과기공소 인정 및 양도양수 신청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40,000원 40,000원 2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3. 유료접종 가. 간 염 나. 장티푸스 다. 유행성 출혈열 라. 풍진	1ml 1인분 0.5ml 단독 백신 1회분	가. 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구입가격으로 한다. 단, 10자리 이하의 금액은 1원 이상 49원 이내의 경우는 50원으로 하고 51원 이상 99원 이내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	※ 무료대상자(서초구민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3조 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풍진접종 대상 - 가임기 여성에 한함

4. 검사			
가. 간염 검사			
(1) A형	1회	가. 검사수수료는 해당연도 검사원가분석(검사시약비+ 재료비)에 따른다.	※ 무료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 -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3조제2항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단, 연 1회에 한함)
(2) B형	1회	단, 10자리 이하의 금액은 1원 이상 49원까지는 50원 으로 하고, 51원 이상 99원 까지는 100원으로 절상한 다.	
(3) C형	1회	나. 외부전문 검사기관 위 탁검사는 계약단가에 따른 다.	
나. 수질 검사	1회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에 준한다.	인허가용이 아닌 것에 한한다.
다. 골다공증 검사	1회	6,700원	※ 무료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등록자 -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3조제2항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단, 연 1회에 한함) ※ 3080 구민건강검진은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에 한함
라. 암표지자 검진	1회	가. 검사수수료는 해당연도 검사원가분석(검사시약비+ 재료비)에 따른다. 단, 10자리 이하의 금액은 1원 이상 49원까지는 50원 으로 하고, 51원 이상 99원 까지는 100원으로 절상한 다.	
마. 갑상선 검진	1회		
바. 풍진 검사	1회		
사. 3080 구민건강 검진 (30세부터 80세까지 건강검진)	1회		
아. 간 기능 검사(8종)	1회	다.	
자. 당뇨·고지혈증 검사(4종)	1회	나. 외부전문 검사기관 위 탁검사는 계약단가에 따른 다.	
차. 신장기능 검사(3종)	1회		
카. 혈액·소변 검사(14종)	1회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사람에게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른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또는 진료비 --.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 (생략) ② <u>수수료</u> 의 종류와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③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 법령이나 <u>조례</u> 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 (현행과 같음) ② <u>수수료</u>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 ③ ----- -- <u>조례</u> 에서 -----.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1종수급권자와 <u>2종수급권자</u> 에 대해서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과 제2조 별표 제5·6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 7. (생략)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① ----- ----- <u>2종수급권자</u> --- ----- <u>별표</u> 중 제3호 및 제4호-----. ② ----- -----. 1. ~ 7. (현행과 같음) 8. -----

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가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9. ~ 11. (생략)

③ 삭제

④ 제2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진료비를 면제받으려고 하는 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납부방법) 수수료 및 진료비는 그날 납부하여야 하고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 그 유족 또는 가족, ----

- 그 유족 또는 가족, -----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9. ~ 11. (현행과 같음)

④ ----- 제10호까지에 따른 진료비 면제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자에 한정하며, 면제 대상자임 -----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

제5조(납부방법) -----
- 당일 -----
-----.

현행

개정안

[별표] <개정 2024. 10. 31.>

수술료의 종류 및 정수금액

종목	단위	금액	비고
1. 건강진단결과서 및 진단서			
가. 건강진단서	1통	3,000원	※ 단, 외국인 결핵확인서, 기숙사 재검용 결핵검사는 1,500원으로 한다
나. (삭제)			
다. 진단서	1통	500원	
라. (삭제)			
마. (삭제)			
바. (삭제)			
사.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1통	3,000원	건강진단결과서와 건강진단서를 동시에 발급 할 경우의 수수료는 "사"항에 "제2호 가"항을 더한 수수료액으로 한다
아. 사망진단서	1통	500원	
자. (삭제)			
차. 결핵진단서	1통	300원	
2. 제증명에 관한 사항			
가. 그 밖에 사실 공부에 의해 발급 하는 증명	1통	350원	
나. 기 발급증명서 추가 발급	1통	300원	
다. 방사선필름 사본 및 영상	1매	3,000원	
사본 교부			
라. (삭제 1998.12)			
마. 의료기관 및 약국(휴, 폐업)	1통	550원	
사실 증명			

3. 인·허가 및 신고 신청에 관한 사항			
가. 종합병원 ·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 개설 허가 신청	1건	100,000원	
나. 종합병원 ·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 개설 허가사항 변경신청(개설장소 이전 허가외의 경우에 한함)	1건	40,000원	
다.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 부속 의료기관 또는 조산원 개설신고	1건	40,000원	I
라.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 부속 의료기관 또는 조산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 신고의 경우에 한함)	1건	20,000원	
마. 안경업소 개설 등록 신청	1건	10,000원	
바. 안경업소 양도 · 양수 신고	1건	10,000원	
자. 치과기공소 인정 및 양도양수 신청	1건	10,000원	
4. (삭제)			
5. 유료검종			
가. (삭제 2011. 7. 14)			가. 유료검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구입가격으로 한다. 단, 10자리 이하의 금액은 1원 이상 49원 이내의 경우는 50원으로 하고 50원 이상 99원 이내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
나. (삭제 2009. 4. 2)			나. (삭제 2009. 4. 2)
다. 간 염	1mℓ		
라. 장티푸스	1인분		
마. 유행성 출혈열	0.5mℓ		
바. (삭제)	0.5mℓ		
사. (삭제 2009. 4. 2)			
아. 풍진	단독 백신 1회분		풍진검종 대상 - 기입기 여부에 한함

수술료의 종류 및 정수금액(제2호 관련)

종목	단위	금액	비고
1. 건강진단서 및 건강진단결과서, 각종 제증명			
가. 건강진단서	1통	3,000원	온라인 발급은 무료
나. 건강진단결과서	1통	3,000원	건강진단결과서 또는 건강진단서와 결핵진단서를 동시에 발급할 경우, 각 증명서 수수료에 각각을 더한 수수료액으로 한다.
다. 결핵진단서 및 확인서	1통	1,500원	온라인 발급은 무료
라. 기 발급증명서 추가 발급	1통	300원	"가"항에 한함
마. 방사선필름 사본 및 영상	1매	3,000원	
바. 의료기관 및 약국(휴, 폐업) 사실 증명	1통	1,000원	
2. 인·허가 및 신고 신청에 관한 사항			
가. 종합병원 ·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 개설 허가 신청	1건	100,000원	
나. 종합병원 ·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 개설 허가사항 변경신청(개설장소 이전 허가외의 경우에 한함)	1건	40,000원	
다.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 부속 의료기관 또는 조산원 개설신고	1건	40,000원	
라.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 부속 의료기관 또는 조산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 신고의 경우에 한함)	1건	20,000원	
마. 안경업소 개설 등록 신청	1건	10,000원	
바. 안경업소 양도 · 양수 신고	1건	10,000원	
사. 치과기공소 인정 및 양도양수 신청	1건	10,000원	
3. 유료검종			
가. 간 염	1mℓ		가. 유료검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구입가격으로 한다. 단, 10자리 이하의 금액은 1원 이상 49원 이내의 경우는 50원으로 하고 50원 이상 99원 이내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
나. 장티푸스	1인분		
다. 유행성 출혈열	0.5mℓ		
라. 풍진	단독 백신 1회분		풍진검종 대상 - 기입기 여부에 한함

6. 검사		
가. 간염 검사		
(1) A형	1회	가. 검사수수료는 해당연도 검사원가분 석(검사시약비+재료비)에 따른다
(2) B형	1회	단 10자리 이하의 금액은 1원 이상 49원까지는 50원으로 하고, 51원 이상 99원까지는 100원으로 결산한다
(3) C형	1회	나. 외부전문 검사기관 위탁검사는 계약 단가에 따른다
나. 수질 검사	1회	저용량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에 준한다
다. (삭제)		
라. 골다공증 검사	1회	6,700 원
마. 암표지자 검진	1회	가. 검사수수료는 해당연도 검사원가분 석(검사시약비+재료비)에 따른다
바. 갑상선 검진	1회	단 10자리 이하의 금액은 1원 이상 49원까지는
사. 종진 검사	1회	50원으로 하고, 51원 이상 99원까지는 100원으로 결산한다
아. 3080 구민건강 검진 (30세부터 80세까지 건강검진)	1회	나. 외부전문 검사기관 위탁검사는 계약 단가에 따른다
자. 간 기능 검사(8종)	1회	50원으로 하고, 51원 이상 99원까지는 100원으로 결산한다
차. 당뇨·고지혈증 검사(4종)	1회	나. 외부전문 검사기관 위탁검사는 계약 단가에 따른다
카. 신장기능 검사(3종)	1회	
타. 혈액·소변 검사(14종)	1회	
7. (삭제)		

4. 검사		
가. 간염 검사		
(1) A형	1회	가. 검사수수료는 해당연도 검사원가분 석(검사시약비+재료비)에 따른다
(2) B형	1회	단 10자리 이하의 금액은 1원 이상 49원까지는 50원으로 하고, 51원 이상 99원까지는 100원으로 결산한다
(3) C형	1회	나. 외부전문 검사기관 위탁검사는 계약단가에 따른다
나. 수질 검사	1회	저용량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에 준한다
다. 골다공증 검사	1회	6,700원
라. 암표지자 검진	1회	가. 검사수수료는 해당연도 검사원가분 석(검사시약비+재료비)에 따른다
마. 갑상선 검진	1회	단 10자리 이하의 금액은 1원 이상 49원까지는 50원으로 하고, 51원 이상 99원까지는 100원으로 결산한다
바. 종진 검사	1회	나. 외부전문 검사기관 위탁검사는 계약단가에 따른다
사. 3080 구민건강 검진 (30세부터 80세까지 건강검진)	1회	가. 검사수수료는 해당연도 검사원가분 석(검사시약비+재료비)에 따른다
아. 간 기능 검사(8종)	1회	50원으로 하고, 51원 이상 99원까지는 100원으로 결산한다
자. 당뇨·고지혈증 검사(4종)	1회	나. 외부전문 검사기관 위탁검사는 계약단가에 따른다
차. 신장기능 검사(3종)	1회	
카. 혈액·소변 검사(14종)	1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 법 규 명 :

○ 성명(개인 · 단체 · 법인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 · 개정안 내용	의견	비고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5-81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4월 10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서초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를 현실적 운영 여건에 맞게 정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률상담 이용 편의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가. 조례명 일부 수정

- (현행) 서울특별시 서초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 (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제6조제2항 상담 운영시간 관련 조항 변경

- (현행) 상담은 매주 5회 이내로 주중에 실시하고 상담시간은~
- (개정) 상담은 수요일에 따라 주중에 확대·축소 운영할 수 있으며, 상담시간은~

다. 제7조제4항 상담관 해촉규정 신설

- (개정) ④ 구청장은 법률상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표시한 경우
 2.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3. 제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법률상담에 참여하지 않는 때가 잦은 경우

라. 제8조제3항 비밀유지의무조항 신설

- (개정) ③ 법률상담관 및 관계공무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마. 제11조 상담 접수처리 기록부 전자파일화 가능

- (현행)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접수처리 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개정)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접수처리 기록부를 비치하되, 전산으로 관리할 경우 전자 파일로 갈음할 수 있다.

3. 기타 사항

가. 예산조치: 해당없음

나.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2) 입법예고 : 2025. 4. 10. ~ 2025. 4. 30. (20일)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부패영향 평가 : 심사 후 반영
- 5) 성별영향 평가 : 심사 후 반영
- 6)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초구청장(참조 : 오케이민원센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mchoi7@seocho.go.kr

2) 주소 : (0675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1층 오케이민원센터

3) 팩스 : 02)2155-6363(팩스 제출 시 반드시 담당자에 유선통보(02-2155-6271))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초구 홈페이지(<http://www.seocho.go.kr>) ‘입법예고’란과 자치법규정보 시스템(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구민생활”을 “주민의 일상생활”로, “있어 구민의 권익 보호와 기업활동의 법률적 측면”을 “대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활동”으로, “법률 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을 실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법률상담실의 명칭) 무료법률상담실의 명칭(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문가 상담코너”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본문 중 “서초구”를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담”을 “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구민생활”을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상담코너 운영)”을 “(상담실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서초구민”을 “구민”으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매주 5회 이내로 주중에 실시하고”를 “수요에 따라 주중에 확대·축소 운영할 수 있으며”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상담코너”를 “상담실”로, “상담책임관을”을 “상담책임관, 법률상담관, 운

영간사를”로, “상담코너 업무 담당부서장”을 “상담실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상담코너 업무 담당주사가”를 “상담실 업무 담당 팀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 또는”을 “사람 또는”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률 상담관”을 “법률상담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구청장은 법률상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표시한 경우
2.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3. 제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법률상담에 참여하지 않는 때가 잦은 경우

제8조제2항 중 “요청 받은”을 “요청받은”으로,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률상담관 및 관계공무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10조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를 “구”로, “등의 자문을 받을”을 “등에게 자문을 할”로 한다.

제11조 중 “유지관리”를 “유지·관리”로, “비치하여야 한다”를 “비치하되, 전산으로 관리할 경우 전자 파일로 갈음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3조 중 “관하여 기타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서울특별시 서초구 무료법률상담</u> <u>운영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구민생활</u> 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등에 있어 <u>구민의 권익 보호와</u> <u>기업활동의 법률적 측면을 지원</u> 하기 위하여 <u>법률 상담(이하</u> <u>“상담”이라 한다)을 실시하고,</u>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률상담실의 명칭) 법률상 담실의 명칭은 “<u>서울특별시 서</u> <u>초구 전문가 상담코너</u>“(이하 “<u>상담코너</u>“라고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 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상담실 위치) 상담실은 서 울특별시 <u>서초구</u> 청사 내에 설 치한다. 단, 여건에 따라 외부사 무실을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상담의 범위) <u>상담의 범위</u>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u>서울특별시 서초구</u> <u>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u> <u>조례</u> 제1조(목적) ----- <u>주민의 일</u> <u>상생활</u>----- --- <u>대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u> <u>호하고 기업활동</u>----- ----- <u>서울특별시 서초구</u> <u>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u>----- ----- -----. 제2조(법률상담실의 명칭) 무료법 률상담실의 명칭(이하 “<u>상담실</u>” 이라 한다)은 “<u>서울특별시 서초</u> <u>구 전문가 상담코너</u>”로 하되, 필 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 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상담실 위치) ----- ----- <u>서초구(이하 “구”라 한</u> <u>다)</u> --. ----- -----. 제4조(상담의 범위) <u>법률상담(이</u> <u>하 “상담”이라 한다)</u>----- -----.

1. 구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 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 4. (생략)

제5조(상담코너 운영) ① 상담대상은 서초구민, 기업체 운영자, 각급기관, 공무원 등 서초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자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4호까지의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 및 소년·소녀 가장 등 저소득층 구민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③ (생략)

제6조(상담방법) ① (생략)

② 상담은 매주 5회 이내로 주중에 실시하고, 상담시간은 근무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법률상담관 등) ① 상담코너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고, 상담책임관

1.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

2. ~ 4. (현행과 같음)

제5조(상담실 운영) ① -----
--- 구민-----

----- 사람으로 --
-----.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상담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수요에 따라 주중에 확대·축소 운영할 수 있으며-----
-----.

제7조(법률상담관 등) ① 상담실-----

----- 상담책임관, 법률상담관, 운영

은 상담코너 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코너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법률상담관은 변호사·세무사·건축사·변리사·법무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노동, 주택, 부동산, 세무 특허 등)별로 법률 상담관을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간사를 -----
-- 상담실 업무 담당 부서장--
----- 상담실 업무 담당 팀장이 ----.

② -----

----- 사람 또는 -----

사람 -----

-----.

③ -----

----- 법률상담관-----
-----.

④ 구청장은 법률상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표시한 경우
2.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3. 제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법률상담에 참여하지 않는 때가 잦은

제8조(상담처리) ① (생 략)

②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자문) 상담책임관은 상담 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선 울특별시 서초구 법률고문,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법률 상담 접수처리 기록부를 비치하 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법률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경우

제8조(상담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요청받은 -----
-- 없으면 -----
-.

③ 법률상담관 및 관계공무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
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10조(자문) -----

----- 구

----- 등에게 자문을 할 ---
---.

제11조(기록유지) -----

--- 유지·관리-----
----- 비치하
되, 전산으로 관리할 경우 전자
파일로 같음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
----- 범위

-----.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
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관
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구청
장이 정한다.

제13조(운영세칙) -----
----- 필
요한 -----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 법규명: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 · 개정안 내용	의견	비고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5-81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휴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휴양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04월 10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1. 개정 이유

- 가. 서초휴양소는 주민 여가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로, 감면 요율 조정을 통해 주민 친화적인 휴양소로 개선 운영하고자 함.
- 나. 타지역 거주자 중 서초구에 재산세를 납부하는 사람에게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기여자로서의 긍지를 높이고자 함.
- 다. 자매우호 도시 주민에게 감면 혜택을 적용하여 유대 관계와 협력을 강화함.
- 라. 황성·태안 서초휴양소의 요금 기준을 통일하여 이용자 혼란을 줄이고 운영 체계를 표준화하고자 함.
- 마. 맞춤법, 띄어쓰기 등 오탈자를 수정하고 약칭 사용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반영하여 형식적 법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서초휴양소 이용료의 감면 요율 조정 (안 제14조)
 - 서초구민과 타 지역 주민에 대한 감면 요율 차등 적용

나. 서초휴양소 이용료의 감면 대상자 추가 (안 제14조)

- 타 지역 주민 “서초구 재산세 납세의무자” 감면 조항 신설
- 타 지역 주민 “서초구 자매우호 도시 주민” 감면 조항 신설

다. 서초휴양소 시설 이용료 조정 (안 별표 2)**라. 맞춤형(오탈자, 띄어쓰기 등), 약칭 사용 등에 따른 조문 정비****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의기관: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 2025. 4. 10.(목) ~ 2025. 4. 30.(수) [20일간]

4.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4월 30일까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참조: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kyj0909@seocho.go.kr

2) 우편: (0675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서초동), 서초구청 5층 행정지원과

3) 팩스: (02)2155-619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 행정지원과(전화: (02)2155-617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초구 홈페이지(<http://www.seocho.go.kr>) ‘입법예고’란과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휴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휴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초구”를 “서울특별시 서초구”로, “설치·운영에 관하여”를 각각 “설치·운영에”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시설이용자”를 “시설 이용자”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구”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아니하다”를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시설”을 “휴양소 내 시설”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횡성서초휴양소 :”를 각각 “횡성서초휴양소:”로 하고, 제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태안서초휴양소 :”를 각각 “태안서초휴양소:”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를 “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그 밖의”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서초구”를 “구”로, “60세 이상의 노인”을 “65세 이상의 구민”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이용일수는 3박4일”을 “이용 일수는 3박 4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입실: 이용 당일 15:00 ~ 22:00
2. 퇴실: 이용 마지막 날 11:00 이전

제7조제3항제1호 중 “전일이용 :”을 “전일이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오전이용:”을 “오전이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오후이용 :”을 “오후이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야간이용 :”을 “야간이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4인실: 4명(1명 이내 추가 가능)
2. 8인실: 8명(2명 이내 추가 가능)

3. 13인실: 13명(2명 이내 추가 가능)

제8조제2호 중 “구민복지”를 “구민 복지”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편익증진”을 “편익 증진”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중 “별지 제1호서식을”을 “별지 제1호서식의 서초휴양소 단체이용(변경) 신청서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2호서식을”을 “별지 제2호서식의 서초휴양소 단체이용 허가서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6조”를 “제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하다”를 “아니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를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용정지·변경·기타”를 “이용정지, 변경, 그 밖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침해”를 “지장을 초래할”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서초구”를 “구”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서초구”를 “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횡성 서초휴양소 :”를 “횡성서초휴양소:”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태안 서초휴양소 :”를 “태안서초휴양소:”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입실”을 “입실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월단위”를 “월 단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① 휴양소 시설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제13조제2항 중 “시간”을 “기한”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한다”를 “객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감면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서초구민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50%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0%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등록장애인: 50%

라.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50%

구에 주민등록은 둔 한 자녀 이상 가정 중

마. 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두 자녀 이상 가정(단,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이거나 19세 미만인 경우): 50%

바. 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한 자녀 가정(단, 자녀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이거나 19세 미만인 경우): 30%

2. 타 지역 주민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20%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0%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등록장애인: 20%

라.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20%

마. 서초구 재산세 납세의무자(단, 직전년도까지 재산세 완납자에 한정하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감면 혜택을 적용받음): 20%

바. 서초구 자매우호 도시 주민 감면: 10%

제14조제2항 중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 위탁”을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으로, “2일에 한해”를 “2일까지만”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5항) 중 “그 밖에 구청장”을 “구청장”으로, “공익상”을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③ 휴양소의 시설을 비수기에 30명 이상 단체가 이용 시에는 이용료의 2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제7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7항) 중 “제3항”을 “제2항”으로, “감경 받으려는 자는”을 “감면받으려는 사람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3일전”을 “3일 전”으로, “경우 :”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를 “1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경우 :”를 각각 “경우:”로 한다.

제1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할”을 “해당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사정에 의하여”를 “사정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사유로 인하여”를 “사유로”로 한다.

1. 예약 및 이용료 납부 후 1시간 이내에 이용일 착오 등으로 인해 취소하게 된 때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환불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휴양소 운영자측 및 이용자측 귀책 사유 두 경우 모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예약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휴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2]

서초휴양소 시설 이용료(제12조제1항 관련)

1. 객실 이용료 (1일 1실 기준)

(단위 : 원)

휴양소명칭	객실별	비수기		주말		성수기	
		서초구민	타지역주민	서초구민	타지역주민	서초구민	타지역주민
황성 서초휴양소	4인실	45,000	65,000	55,000	80,000	70,000	100,000
	8인실	65,000	90,000	80,000	130,000	120,000	170,000
	13인실	90,000	120,000	110,000	150,000	150,000	200,000
태안 서초휴양소	4인실	45,000	65,000	55,000	80,000	70,000	100,000
	8인실	65,000	90,000	80,000	130,000	120,000	170,000

※ 성수기 (7월15일 ~ 8월25일), 주말 (금, 토요일, 공휴일 전일), 비수기(성수기·주말제외)

※ 인원 추가 시 1명당 10,000원(침구류 포함)

※ 4인실(1명 이내), 8인실(2명 이내), 13인실(2명 이내) 인원 추가 가능

2. 부대시설 이용료

(단위 : 원)

시 설	구 분	기 준	이 용 요 금	비 고
강 당	실	1시간	10,000	
운 동 장	전체	1시간	10,000	
탁구 · 당구장(포켓)	대	1시간	5,000	
강 의 실	실	1시간	10,000	
식 당	실	식	30,0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서초구 서초휴양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u>설치·운영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서울특별시 서초구 -- 설치·운영에 -----</u> ----- ----- ----- ----- <u>설치·운영에 -----</u> ----- -----.
제3조(업무) 휴양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업무)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시설이용자</u> 에 대한 편의제공과 생활지도 및 보호	2. <u>시설 이용자</u>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제4조(조직) <u>구청장</u> 은 휴양소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사무조직을 구성·운영한다.	제4조(조직) <u>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u>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소장은 <u>군</u> 공무원으로 하되, 6급 이상의 일반직 또는 계약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민간 위탁 운영 시에는 그러하지 <u>아니하다</u> .	2. ---- <u>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u>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운영요원은 <u>시설</u> (보일러, 전	4. ----- <u>휴양소 내 시설--</u>

기, 통신 등)을 관리하며, 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5. (생략)

제5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휴양소를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황성서초휴양소 : 법인, 단체
2. 태안서초휴양소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② 휴양소를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조례를 준용한다.

1. 황성서초휴양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2. 태안서초휴양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이용대상자) ① 휴양소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은 타

--.

5. (현행과 같음)

제5조(업무의 위탁) ① -----

---.

1. 황성서초휴양소: -----
2. 태안서초휴양소: -----

② -----

-----.

1. 황성서초휴양소: -----

2. 태안서초휴양소: -----

제6조(이용대상자) ① -----

-----.

---- 구 -----

지역 주민보다 우선 배려한다.

1. ~ 3. (생 략)

4. 그 밖의 휴양소 이용을 희망하는 타 지역 주민·단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태안서 초휴양소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서초구 관내 거주 60세 이상의 노인 및 그와 동행하는 자를 우선으로 한다.

제7조(이용기준) ① 휴양소의 이용일수는 3박4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연장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② 휴양소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 실: 이용 당일 14:00 ~ 22:00
(단, 성수기·주말·공휴일은 15:00 ~ 22:00)

2. 퇴 실: 이용 마지막 날 12:00 이전 (단, 성수기·주말·공휴일은 11:00 이전)

③ 휴양소의 부대시설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일이용 : 08:00 ~ 22:00

2. 오전이용 : 08:00 ~ 12:00

3. 오후이용 : 13:00 ~ 17:00

4. 야간이용 : 18:00 ~ 22:00

④ 휴양소의 객실별 이용정원은

-----.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② -----

-- 구 ----- 65세 이상
의 구민 ----- 사람
을 -----.

제7조(이용기준) ① ----- 이용
일수는 3박 4일 -----
-----.

② -----
-----.

1. 입실: 이용 당일 15:00 ~ 22:00

2. 퇴실: 이용 마지막 날 11:00
이전

③ -----
-----.

1. 전일이용: -----

2. 오전이용: -----

3. 오후이용: -----

4. 야간이용: -----

④ -----

다음 각 호와 같다. .

1. 4인실 : 추가인원 1명 이내

2. 8인실 : 추가인원 2명 이내

3. 13인실 : 추가인원 2명 이내

제8조(이용범위) 휴양소는 다음 각 호의 행사 또는 여가활동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

1. (생 략)

2. 그 밖에 구청장이 이용자의 편익 또는 구민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강사) ① 구청장은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0조(이용신청) ① 휴양소 시설을 30명 이상 단체가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이용 제한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 . <후단 삭제>

1. 4인실: 4명(1명 이내 추가 가능)

2. 8인실: 8명(2명 이내 추가 가능)

3. 13인실: 13명(2명 이내 추가 가능)

제8조(이용범위) -----

1. (현행과 같음)

2. -----

----- 구민 복지 -----

제9조(강사) ① -----

-- 편익 증진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이용신청) ① -----

----- 별지 제1호서식의
서초휴양소 단체이용(변경) 신
청서를 -----.

② -----

----- 별지 제2호서식
의 서초휴양소 단체이용 허가서

③ 휴양소 이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제6조 각 호의 순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태안서 초휴양소는 노인여가활동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자치단체의 공익성을 위하여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안 니하다.

제11조(이용제한 등) ① 구청장은
휴양소를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에는 휴양소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정지·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 3. (생략)

4. 휴양소 운영에 침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생략)

제12조(이용료) ① 휴양소를 이용
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이

_____.

③ 제6조 제1항 아
니 한다.

제11조(이용제한 등)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 이용 제한이 필요하
다고 구청장이 -----
--

② _____

 _____ 이용정지, 변경, 그
 밖

1. ~ 3. (현행과 같음)

4. ----- 지장을 초래할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이용료) ① 휴양소 시설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구민 요금을 적용한다.

1.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2. 서초구 직원 및 직원 직계가 족

3. 형성서초휴양소 : 강원도 형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4. 태안서초휴양소 : 충청남도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③ 기준인원을 초과할 때에는 제7조제4항의 객실별 이용정원 내에서만 입실 가능하며, 추가인원에 대해서는 추가요금을 받는다.

④ 소장은 이용료를 일일 결산하고 월단위로 세입 징수 결의하여 세외수입 처리한다. 다만, 위탁운영 시 수익금 관리는 위탁계약에 의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예약 및 이용료 납부)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시

② -----

-----.

1. 구-----

----- 사람

2. 구 -----

3. 형성서초휴양소: -----

----- 사람

4. 태안서초휴양소: -----

----- 사람

③ -----

----- 입실이 -----

-----.

④ -----

----- 월 단위-----

-----.

----- 따라 -----

-----.

제13조(예약 및 이용료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기

간 이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이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한다. <단서 신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한 -----

--.

제14조(이용료의 감면) ① -----

----- 객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한다.

1. 서초구민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50%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0%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등록장애인: 50%

라.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50%

마. 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두 자녀 이상 가정(단,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이거나 19세 미만인 경우): 50%

바. 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한 자녀 가정(단, 자녀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이거나 19세 미만인 경우): 30%

2. 타 지역 주민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20%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0%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등록장애인: 20%

라.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20%

마. 서초구 재산세 납세의무자(단, 직전년도까지 재산세 완납자에 한정하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감면 혜택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등록장애인

4.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
른 경로우대자

5.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
어 있는 2자녀 이상 가정(단,
막내가 19세 미만)

②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 위탁
아동은 연 상·하반기 각 2일에
한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③ 「서울특별시 서초구 병역명
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
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
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이용료의 10퍼센
트를 감경할 수 있다.

④ 휴양소의 시설을 비수기 단
체이용(30명 이상)시에는 이용
료의 2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
다.

⑤ 그 밖에 구청장이 직접 주관
하는 행사 또는 다른 지방자치
단체에서 대관하는 경우, 공익
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을 적용받음): 20%

바. 서초구 자매우호 도시 주
민 감면: 10%

<삭 제>

<삭 제>

<삭 제>

②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 2일까지
만 -----.

③ 휴양소의 시설을 비수기에 30
명 이상 단체가 이용 시에는 이
용료의 2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삭 제>

④ 구청장-----

----- 그 밖
에 -----

수 있다.

⑥ 감면조건이 중복될 때에는
중복해서 감면할 수 없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감경
받으려는 자는 시설 이용 시 증
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이용료의 환불) ① 휴양소
의 시설을 예약하고 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예약을 취소할 경
우의 환불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일 3일전까지 예약을 취
소하는 경우 : 전액 환불
2. 이용일 1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80% 환불
3. 이용당일 12시(정오)까지 예
약을 취소하는 경우 : 50% 환
불
4. 이용당일 12시(정오)이후 예
약을 취소하는 경우 : 환불 불
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납부한 이용료를
전액 환불한다.

<신 설>

-----.

<삭 제>

⑤ ----- 제2항-----
-----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
-----.

제15조(이용료의 환불) ① -----

-----.

1. ----- 3일 전-----
----- 경우: -----
2. ----- 1일 전까지 예약을 취
소하는 경우: --
3. -----
----- 경우: -----
--
4. -----
----- 경우: -----
--

② -----
해당되는 -----
-----.

1. 예약 및 이용료 납부 후 1시
간 이내에 이용일 착오 등으
로 인해 취소하게 된 때

1. 휴양소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휴양소의 이용이 불가능한 때

<신 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별표 2]

서초휴양소 시설 이용료(제12조제1항 관련)

1. 객실 이용료 (1일 1실 기준)

(단위 : 원)

휴양소 명칭	객실별	비수기		주말		성수기	
		서초 구민	타지 역주민	서초 구민	타지 역주민	서초 구민	타지 역주민
횡성 서초 휴양소	4인실	45,000	65,000	55,000	80,000	65,000	90,000
	8인실	65,000	90,000	80,000	100,000	90,000	110,000
	13인실	90,000	110,000	100,000	120,000	120,000	150,000
태안 서초 휴양소	4인실	40,000	60,000	50,000	80,000	70,000	100,000
	8인실	60,000	90,000	80,000	130,000	120,000	170,000

※ 성수기 (7월15일 ~ 8월25일), 주말 (금, 토요일, 공휴일 전일), 비수기(성수기·주말제외)

※ 정원 외 추가인원 1명당 5,000원

※ 침구류(이불, 요, 베개) 추가시 1세트당 5,000원

2. -----
-- 사정으로 --

3. -----
-- 사유로 -----

③ 제1항 및 제2항의 환불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휴양소 운영자측 및 이용자측 귀책사유 두 경우 모두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준용한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별표 2]

서초휴양소 시설 이용료(제12조제1항 관련)

1. 객실 이용료 (1일 1실 기준)

(단위 : 원)

휴양소 명칭	객실별	비수기		주말		성수기	
		서초 구민	타지역 주민	서초 구민	타지역 주민	서초 구민	타지역 주민
횡성 서초 휴양소	4인실	45,000	65,000	55,000	80,000	70,000	100,000
	8인실	65,000	90,000	80,000	130,000	120,000	170,000
	13인실	90,000	120,000	110,000	150,000	150,000	200,000
태안 서초 휴양소	4인실	45,000	65,000	55,000	80,000	70,000	100,000
	8인실	65,000	90,000	80,000	130,000	120,000	170,000

※ 성수기 (7월15일 ~ 8월25일), 주말 (금, 토요일, 공휴일 전일), 비수기(성수기·주말제외)

※ 인원 추가 시 1명당 10,000원(침구류 포함)

※ 4인실(1명 이내), 8인실(2명 이내), 13인실(2명 이내) 인원 추가 가능

2. 부대시설 이용료

(단위 : 원)

시 설	구 분	기 준	이 용 요 금	비 고
강 당	실	1시간	10,000	
운 동 장	전체	1시간	10,000	
탁구 · 당구장(포켓)	대	1시간	5,000	
강 의 실	실	1시간	10,000	
식 당	실	식	30,000	

2. 부대시설 이용료

(단위 : 원)

시 설	구 분	기 준	이 용 요 금	비 고
강 당	실	1시간	10,000	
운 동 장	전체	1시간	10,000	
탁구 · 당구장(포켓)	대	1시간	5,000	
강 의 실	실	1시간	10,000	
식 당	실	식	30,000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 법규명: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 · 개정안 내용	의견	비고